

2004. 6. 29. 10:00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 ① 제5교 · 연결접속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② 양평근린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견]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4. 6. 7.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6. 12.

다. 상정일자 : 2004. 6. 25.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

라. 의안번호 : 제 2004 - 25호

2.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

가. 제안이유

○ 상림리와 송정리는 최근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거창읍의 강남·북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교통량이 거창교에 집중됨으로써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도심진입교통의 우회처리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송정리와 상림리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량과 접속도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거창군·읍 송정리153-4 ~ 상림리 151-191

○ 규모 : 410m(교량1개소 104m, 도로306m), 폭20m

○ 기능 : 보조간선도로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6년까지 거창도시기본계획상 제5교를 건설토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민원해소를 위하여는 신속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본계획으로는 건축제한이 곤란하며, 건축이 허가될 경우 향후 공사시행시 보상금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교량 및 접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9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사업비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여 시설결정후 장기간 미집행시 오히려 군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편입토지등에 소요될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절차 우선 이행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5신규사업으로 편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의견청취 대상은 주간선도로로 되어 있으므로 의견청취 요구한 동 건은 보조간선도로 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대상은 되지 아니함.

○ 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시계획결정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안전을 제출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원활히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견청취 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4. 결정안에 대한 의견:

○ 최근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림리와 송정리를 연결하는 대부분의 교통량이 거창교에 집중됨으로써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도심진입교통의 우회처리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

양평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일 : 2004. 6. 7.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6. 12.

다. 상정일자 : 2004. 6. 25.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

라. 의안번호 : 제 2004 - 26호

2.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읍민생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양평근린공원사업의도시관리계획시설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거창군 · 읍 양평리 1190번지 일원

○ 규모 : 107,275m²(32,451평)

○ 주요시설 : 도로 및 광장, 군민의 숲,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광장, 피크닉장, 주차장, 화장실 등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읍민생활공원은 경남도가 푸른경남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시군별 1개소씩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의 양평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는 2003회계년도 예산편성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한 것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는 사업임.
- 동 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한 농림지역해제, 편입토지보상 및 토지수용등 사업시행등을 위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함.
- 군의회의 의견은 도시계획결정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임.
- 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후 동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동사업의 위치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2003회계연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한 사항으로써 시설계획 면적도 기 보고한 사항과 일치하는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결정안에 대한 의견:

-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읍민생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양평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

정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